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-118호

「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8일

## 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###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,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소속공무원 위촉 규정을 삭제함(안 제9조).
- 나. 당연직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함(안 제10조제1항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교육  
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243, FAX 042-270-5249, E-mail : bokdung@edurang.net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재정과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소속 공무원</u>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③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계 법 령

## ● 지방재정법

[시행 2015.5.13.] [법률 제13283호, 2015.5.13., 일부개정]

**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## ● 지방재정법 시행령

[시행 2015.10.6.] [대통령령 제26572호, 2015.10.6., 일부개정]

**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**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3. 사업공모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
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